##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승수·김상훈·권영세

성일종 • 서일준 • 주진우

신성범 • 김예지 • 최수진

이인선 • 곽규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12대중과실이나 음주측정 불응,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과실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포함할 뿐, 정작 교내 운동장이나 진입로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시설 경계 내에서 가중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제기됨. 현실적으로 학교 내 운동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함에도,

교내의 운동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육 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 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 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 내(진입로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 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 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 민학교, 제45조 및 제5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 초등·중등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 략)	제3조(처벌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2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	
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	
(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	
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	
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	
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	
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	
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	
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 략) <신 설>


- 1. ~ 12. (현행과 같음)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 내(진입로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u>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u> 따른 유치원
  - <u>나. 「초·중등교육법」 제38</u> <u>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u> 학교, 특수 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제41

    조 및 제44조에 따른 중학
    교, 고등공민학교, 제45조
    및 제54조에 따른 고등학
    교, 고등기술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마. 「초·중등교육법」 제60

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 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성급 및 제구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성급 및 제구교육기관 성급 및 제구교육기관 성급 및 제구교육기관 성급 및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초등・중등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